

지역사회의 특성이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

송 윤 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과 생태학적 특성이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0년도 범죄 피해조사 데이터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별 범죄피해 단위 통계자료와 81개 시군구 단위의 통계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은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간 유대가 강한 지역사회의 피해자일수록, 신고의식이 낮은 지역사회의 피해자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빈곤율, 가족붕괴율, 인구 이동, 성비 등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은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미시적인 신고요인을 살펴보면, 가구범죄일수록,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저소득자일수록,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피해자일수록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 주제어 : 범죄피해신고, 범죄피해조사, 사회적 유대, 사회경제적 지위, 경찰에 대한 신뢰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I.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암수범죄를 추정하고 실제 범죄발생규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황지태, 2009; 박경래외., 2010; 이창훈, 2011). 이에 따라 범죄피해 미신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 피해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범죄피해 신고율은 26.1%로 범죄피해 4건 중 1건 정도만 경찰에 신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신고율이 낮은 편이다. Inter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ICVS)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67개국의 범죄신고율 평균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는 27.9%, 강도는 37.7%, 주거침입절도는 49%인 것으로 나타났다(Azfar & Gurgur, 2013). 동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범죄신고율은 절도 18.2%, 강도 22.2%, 주거침입절도 34.5%로 67개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피해자의 범죄피해 신고는 범죄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 효과적인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피해신고는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공론화함으로써 범죄억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70% 이상의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암수범죄로 남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재산적·신체적 피해를 입고도 왜 신고하지 않는 것일까?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범죄피해자의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비용편익계산에 따라 신고여부를 결정하고 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상황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학적 모형이 주를 이루었다(Skogan, 1984). 이후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비용편익계산 뿐만 아니라 규범적 판단에 의거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며, 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중시적·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맥락이 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생태학적 모형이 활발히 논의되었다(Goudriaan, 2006). 먼저, 경제학적 모형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론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 가해자의 보복가능성, 신고의 절차적 비용, 보상가능성, 수치심, 죄책감 등이 피해신고의 비용 또는 편익으로 언급되어 왔다. 범

죄의 심각성은 통상 범죄로 인한 재산적 손실액, 부상정도, 가해자수, 가해자의 무기소지 여부 등으로 측정되며, 범죄가 심각할수록 피해자의 신고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가 적지 않다(Baumer, 2002; Goudriaan, 2006; 탁종연, 2010). 또한 범죄피해자의 특성, 즉 사회경제적 지위, 경찰에 대한 신뢰와 범죄발생 위치, 가·피해자 관계와 같은 범죄의 맥락적 요소도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udriaan & Nieuwebeerta, 2007).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 지역사회, 국가 등의 구조적 또는 생태학적 특성이 신고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범죄 및 피해자 특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역사회의 구조적 또는 생태학적 변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0년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범죄피해건수 대비 신고건수의 비율이 시군구별로 차이가 났다. 이러한 행정구역간 신고율 차이는 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에 일부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적 변인은 범죄신고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한 항목이라는 점에서 보다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피해 신고의 결정요인, 특히 지역사회의 특성이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은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효과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통계분석과정에서 지역변인을 개인수준 변인으로 투입하기 보다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을 구분하여 위계적 변인들을 다루는 다층모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신고결정이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층회귀모형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된 위계적 로지스틱 모형(hierarchical logistic model)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사건 및 개인의 특성이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의 특성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가. 범죄신고 결정요인 이론

Goudriaan et al.(2005)은 범죄신고 결정모형을 경제학적 모형, 심리학적 모형, 사회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 구분한다. 경제학적 모형은 범죄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수준의 접근인 반면 심리학적 모형은 피해자의 특성, 상황, 직접적인 사회환경에 초점을 맞춘 중시적 수준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회학적 모형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수준의 접근이다.

구체적으로 경제학적 모형, 즉 비용편익이론(cost-benefit theory)에서 피해자는 피해신고의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계산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한다(Skogan, 1984).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커진다. 재산적 손실, 부상, 가해자의 수, 무기소지 여부 등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가능성, 신고의 절차적 비용, 그리고 보상가능성도 범죄신고의 비용 및 편익에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보복의 두려움이 생겨서 범죄신고를 꺼려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용편익분석에만 의존해서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혹은 이것은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와 같은 규범도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적 모형(psychological model)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신고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Ruback et al.(1982)은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당한 후에는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어 대처방안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써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규범이 신고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Ruback et al.(1984)에 따르면 주변인은 조언, 피해자에게 중요한 그룹의 규범(normative standard) 제시, 사회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사건을 범죄로 인식할 때, 피해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또는 피해자가 그것에 어

떻게 대응해야할지 결정할 때 주변인의 조언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심리학적 모형은 범죄 및 피해자가 속해있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괄하지 못한다.

사회학적 모형(sociological model)은 신고행위를 거시적 수준에서 설명하고 범죄신고율이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Black(1976)은 범죄신고, 규제 기관방문, 소송 등 법의 사용량이 사회적 계층, 사회적 거리, 문화, 조직, 그리고 사회적 통제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사자의 계층에 따라 법의 사용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더 많이 사용될수록 공식적 사회통제 기제인 법의 사용이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학적 모형은 범죄신고가 개인수준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사회구조와 상관없는 범죄 및 개인간 차이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다층적 사회생태학적 모형(socio-ecological model)은 기존 모형을 통합한 것으로 범죄신고 결정요인 분석 시 복수의 집합수준(aggregation level)과 의사결정프로세스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는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즉,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시적 수준의 상황, 피해자가 속한 중시적 수준의 사회적 맥락,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맥락 등 복수의 집합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였다(Goudriaan et al., 2004).¹⁾ 피해자의 의사결정은 각 집합수준에서 비용편익계산 또는 규범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경제학적 모형에서 비용편익계산 프로세스는 범죄의 객관적인 심각성 및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심각성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 비용편익계산은 범죄의 심각성과 같은 범죄의 특성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같은 맥락적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역사회는 피해자 대신 범죄피해를 신고

1) Goudriaan et al.(2004)은 범죄피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집합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미시적 수준의 상황에는 가해자 인지여부, 보복위험, 부상정도, 피해액, 경찰접근수단, 보상가능성, 경찰반응인식, 가피해자 관계, 수치심, 죄책감 등이 있다. 중시적 수준의 사회적 맥락으로는 이웃 또는 지역사회의 규범 등이 있다.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맥락으로는 국가의 구조적 또는 생태학적 특성이 있다.

하거나 신고를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의 신고 비용 및 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범적 프로세스는 피해자의 사회적 맥락에 존재하는 규범이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심리학적 모형과 사회학적 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학적 모형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규범이, 사회학적 모형에서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규범이 범죄신고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는 규범적 프로세스가 모든 집합수준에서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나. 지역사회의 특성이 범죄신고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와 유대·경찰에 대한 신뢰·사회경제적 지위가 주민들의 범죄피해 신고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Baumer 2002, Goudriaan et al, 2005).

먼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사회해체이론으로부터 파생되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지역사회의 유대,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 지역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 등을 통해 실현된다.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빈곤, 인종적 이질성, 주거의 불안정, 가족의 붕괴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이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통제능력을 약화시킨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강력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분쟁을 중재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가정한다. 나아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의 주민이 경찰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통제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한 지역사회의 주민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가 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한 지역사회의 경우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들은 경찰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신고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경찰신고를 꺼려한다. 반대로, 일군의 학자들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효과적이지 않는 지역의 주민일수록 향후 범죄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경찰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통제에 대한 수요나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

라고 주장한다.

경찰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가 낮은 경우 피해신고의 기대이익이 낮아지게 된다. 범죄피해 신고의 기대이익은 경찰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경험 및 인식에 따라 달라 지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 대한 주변인의 신뢰 및 조언에 의존해 신고의 기대이익을 계산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더 낮은 지역에 사는 피해자일수록 신고의 기대이익도 더 낮을 개연성이 있다. 결국 경찰에 대한 신뢰가 더 낮은 지역에 사는 피해자일수록 신고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Black(1976)의 계층이론(stratific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법사용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몇몇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지역사회의 유대 및 경찰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고가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의 물질적·정치적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조직화가 어렵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상호 접촉빈도가 낮고 지역사회조직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유대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Anderson(1999)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범죄피해 신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통해 설명하였다. Anderson(1999)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신고간 정(+)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의 주민들(특히, 젊은 사람, 남성, 흑인)은 주류사회 및 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경찰이나 사법기관을 불신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소위 길거리코드(code of street)라 불리는 고유의 행동규범이 생긴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해봐야 경찰이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도리어 피해자를 괴롭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 둘째, 길거리 코드에 따른 행동수칙을 살펴보면, 각자

의 안전은 각자가 책임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약하고 비겁한 행동으로 간주하며 경찰신고 시 보복의 두려움을 준다. 이러한 길거리 코드의 행동수칙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피하고 범죄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지하경제에 내몰리며 이로 인해 범죄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신고를 꺼릴 개연성이 있다. Skogan(1984)에 따르면 불법적인 활동에 개입한 자는 수치심, 당황, 우려 때문에 경찰신고를 꺼려한다. Anderson은 좌절감, 소외감, 길거리 코드의 경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경찰신고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간 비선형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실증연구

범죄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대부분 범죄특성과 피해자특성에 집중되어 있다. 범죄의 특성으로는 범죄유형, 범죄의 심각성 등이 신고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신고율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낮고, 범죄로 인한 재산적 손실, 부상 등이 심각할수록 피해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umer, 2002; 탁종연, 2010). 사회경제적 지위, 범죄피해경험 및 경찰에 대한 신뢰 등 피해자의 특성이 신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피해자의 법사용량이 더 많다는 Black의 이론과 달리,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노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소수인종일 때 신고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가 있다(Goudriaan et al., 2005; Hart and Rennison, 2003; 노성훈, 2012). Xie et al(2006)는 과거 범죄피해 신고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을 가진 피해자일수록 추가범죄피해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Hickman and Simpson 200; Holmberg, 2004). 경찰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가 높을수록 신고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oudriaan et al., 2005, 2006).

범죄의 맥락, 즉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 범죄가 일어난 위치 등이 피해자의 신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 가·피해자간 관계가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 아는 사이일 경우 신고가능성이 낮다는 결과(Gartner and Macmillan, 1995; Lizotte, 1985; Pino & Meier, 1999; Ruback, 1993), 가해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고가능성이 낮다는 결과(Felson et al., 1999), 가피해자간 관계가 피해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다(Bachman, 1993, 1998). 범죄가 일어난 위치가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결과가 다양하다. Felson et al.(2002)는 가정폭력의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가해자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욕구보다는 자기방어에 대한 욕구가 더 커서 피해자의 신고가능성이 타 유형의 폭력에 비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Goudriaan & Nieuwebeerta(2007)은 청소년 폭력범죄의 경우 공공장소보다는 준 사적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의 신고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속한 지역사회 특성이 범죄신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이루어졌다. Baumer(2002)는 미국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지위가 폭력범죄의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도나 가중폭행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udriaan et al.(2005)은 지역의 유대,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경제적 지위가 범죄피해의 신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네덜란드 범죄피해 조사자료와 위계적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사회적 유대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범죄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udriaan et al.(2004)은 유럽을 포함한 16개국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수준의 사회적 맥락이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의 구조적 특성과 생태학적 특성은 범죄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범죄신고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신고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모두 사용한 전례가 없다. 그동안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사건자체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이 범죄피해 신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검증하였다(탁종연·노성훈, 2009; 탁종연, 2010; 노성훈, 2012). 탁종연(2010)은 제8차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로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절도의 경우 피해규모, 무기소지여부, 주변지역 범죄만연도에 대한 인식, 나이 등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 나타났고, 절도의 경우, 피해규모, 가해자와의 관계, 성별, 소득수준 등이 중요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영향 요인을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제9차 범죄피해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1년 4월 26일부터 18일간 전국의 7,550가구에 속한 14세 이상의 남녀 16,557명을 대상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여부, 피해상황 및 결과 등을 질문한 것이다(김지선·홍영오, 2011). 2010년 한 해 동안 주거 침입 강·절도 및 손괴 등 가구대상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가구는 395가구로 보고된 피해건수는 444건이다. 동 기간 사기, 절도, 강도, 폭행 등 개인대상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549명, 보고된 피해건수는 612건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가구범죄와 개인범죄의 총 보고건수는 1,056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범죄신고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지역변수를 설정하였다.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동질적 지역사회로 파악하여 조사하는 것이 지역사회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지만,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지역적 특성 변수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역적 특성 변수(예를 들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수의 비율, 성비 등)는 통계청 등에서 시군구 단위로 제공된다. 데이터를 가공함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구단위는 시

단위로 합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건수가 5 이상인 시군구 81개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사건수는 총 838건²⁾, 피해자 수는 709명³⁾, 지역사회 수는 81개이다. 다만, 생태학적 범죄학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들을 10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건수가 10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윤우석, 2010). 이때 분석대상 시군구는 40개, 피해건수는 573건, 피해자수는 481명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는 범죄피해 신고여부이다. 이 변수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1로 코딩)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0으로 코딩)로 나뉜 이분형 변수이다. 범죄피해의 총 838건 중 신고사례가 182건이었다.

설명변수로는 범죄특성, 피해자특성, 피해자가 속한 지역의 구조적·생태학적 특성을 사용하였다. <표 1>에서는 추정에 포함된 변수와 요약통계의 특성을 범죄피해 신고여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범죄특성에 관한 변수로는 범죄유형, 정신적 피해여부, 재산상 피해액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범죄유형은 크게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구분하였다.

범죄피해의 심각성은 정신적 고통 여부와 재산상 피해액으로 측정하였다. 범죄로 인해 우울함, 고립감, 두려움,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사람을 피해서 이사, 자살충동, 자살시도 등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으면 정신적 고통 변수를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0으로 코딩

- 2) 분석대상 범죄건수가 1,056건에서 838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범죄유형별 피해건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침입강도(19→13), 주거침입절도(226→167), 단순주거침입(38→31), 주거침입기타(15→13), 단순손괴(4→3), 주거침입손괴(9→5), 자동차절도(31→26), 자동차손괴(102→87), 사기(215→175), 절도(270→211), 강도(42→36), 폭행(40→32), 성폭행(25→23), 괴롭힘(7→6), 협박(5→2)
- 3) 범죄피해조사 자료에는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개별 범죄사건은 피해자에, 피해자는 지역사회에 종속되어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 Goudriaan et al.(2004)은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3층 구조의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개별 범죄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추후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이분형 변수이다. 피해자의 46%, 신고자의 58%, 미신고자의 42%가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산상 피해액은 연속형 변수로 피해자들은 평균 356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재산상 피해액의 표준편차가 2,535만원으로 커서 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제9차 범죄피해조사에서 정신적 고통은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조사된 반면, 재산상 피해액은 주거침입 강도 및 절도, 차량 손괴 및 절도, 사기,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국한된 변수로 분석가능한 표본수가 611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벤치마크 모형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강건성 테스트 시 재산적 피해액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특성 변수로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가구구조, 학력,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사용하였다. 여성은 응답자의 성별을 측정한 변수로서 응답자가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으로 코딩하였다. 피해자의 51%, 신고자의 48.4%, 미신고자의 52.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피해자의 만 나이를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피해자의 평균나이는 40.1세, 신고자의 평균나이는 43세, 미신고자의 평균나이는 39.3세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 수를 측정한 변수이다. 1인 가구이면 1로 코딩하고,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이면 0으로 코딩하였다. 피해자의 12.4%, 신고자의 11.5%, 미신고자의 12.7%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측정한 이분형 변수로서 응답자가 대졸이상이면 1, 그보다 낮은 학력을 소지했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피해자의 40.9%, 신고자의 49.2%, 미신고자의 40.5%가 대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은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을 측정한 변수이다.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를 1로 코딩하고 200만원 이상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피해자의 32.7%, 신고자의 41.8%, 미신고자의 30.2%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도는 피해자들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와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 등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와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는 5점 서열척도 응답으로 모두 더미 변수이며,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0.42이다. 피해자들은 평균적으로 경찰의 검거능력(평균 2.85)보다는 출동태도(평균 3.41)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경찰의 출동태도와 검거능력에 대해 신고자는 미신고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신고변수와의 상관관계는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0.16)가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0.04)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범죄 및 피해자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전체			신고자		미신고자	
			범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찰신고			0~1	0,217	0,413	1	0	0	0
개인범죄			0~1	0,588	0,492	0,462	0,500	0,623	0,485
정신적 피해 여부			0~1	0,452	0,498	0,577	0,495	0,418	0,494
재산적 피해액의 로그값			8,5~19,8	12,422	1,856	13,457	1,818	12,154	1,771
여성			0~1	0,551	0,500	0,484	0,501	0,521	0,500
나이			14~85	40,073	16,042	43,027	15,841	39,253	16,013
1인 가구			0~1	0,124	0,330	0,115	0,320	0,127	0,333
대졸이상			0~1	0,409	0,492	0,423	0,495	0,405	0,491
저소득			0~1	0,327	0,469	0,418	0,495	0,302	0,459
경찰에 대한 신뢰	출동 태도	출동태도	1~5	3,406	0,926	3,330	1,073	3,427	0,881
		매우 부정적	0~1	0,027	0,163	0,055	0,229	0,020	0,139
		부정적	0~1	0,134	0,340	0,165	0,372	0,125	0,331
		보통	0~1	0,337	0,473	0,308	0,463	0,345	0,476
		긍정적	0~1	0,411	0,492	0,341	0,475	0,430	0,495
		매우 긍정적	0~1	0,092	0,289	0,132	0,339	0,081	0,273
	검거 능력	검거능력	1~5	2,852	0,943	2,566	0,960	2,931	0,923
		매우 부정적	0~1	0,078	0,268	0,137	0,345	0,061	0,239
		부정적	0~1	0,266	0,442	0,341	0,475	0,245	0,431
		보통	0~1	0,413	0,493	0,357	0,480	0,428	0,495
		긍정적	0~1	0,214	0,410	0,148	0,356	0,232	0,422
		매우 긍정적	0~1	0,030	0,170	0,016	0,128	0,0344	0,180
피해건수			838			182		656	
지역사회수			81			81		81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수로는 지역사회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유대, 그리고 신고의식을 사용하였다(Goudriaana et al. 2004, 2005). 경찰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는 경찰의 출동태도와 검거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에서 “매우 긍정적”에 이르는 5점 서열척도 응답의 평균값을 81개 시군구별로 각각 재코딩하였다.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 변수의 평균값은 3.49, 최소값은 3.02, 최대값은 4.35이다.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 변수의 평균값은 3.09, 최소값은 1.71, 최대값은 4.30이다. 사회적 유대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서열척도에 응답한 값의 평균을 81개 시군구별로 재코딩하였다. 사회적 유대 변수의 평균값은 3.69, 최소값은 3.03, 최대값은 4.51이다. 신고의식은 “우리 동네사람들은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는 문항에 대한 5점 서열척도 응답값의 평균을 81개 시군구별로 재코딩하였다. 신고의식 변수의 평균값은 4.10, 최소값은 3.55, 최대값은 4.75이다.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수로는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율, 인구이동, 여성비율, 빈곤율, 이혼자비율을 사용하였다(Goudriaana et al. 2004, 2005). 범죄발생율을 제외한 사회구조적 변수는 국가통계포털의 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해석의 용이성과 동일성을 위하여 z-score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율은 지역사회별 응답자 수 대비 피해건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율 평균은 0.10이고 최소값은 0.03이고 최대값은 0.28이다. 인구이동은 지역사회의 인구수 대비 전입자수 비율, 빈곤율은 지역사회의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수의 비율, 이혼자비율은 지역사회의 인구수 대비 연간 이혼자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인구이동의 최소값은 -1.16, 최대값은 6.19이다. 빈곤율 변수의 최소값은 -1.81, 최대값은 3.65이다. 이혼자비율 변수의 최소값은 -2.84, 최대값은 1.77이다.

〈표 2〉 지역사회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찰 출동태도 신뢰	3,518	0,208	3,024	4,351
경찰 검거능력 신뢰	3,095	0,399	1,712	4,298
사회적 유대	3,700	0,240	3,033	4,509
신고의식	4,101	0,202	3,554	4,754
범죄발생율	0,095	0,045	0,034	0,278
여성비율	0	1	-3,830	2,466
인구이동	0	1	-1,161	6,188
빈곤율	0	1	-1,808	3,646
이혼자비율	0	1	-2,835	1,766

3. 연구모형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대한 지역사회 영향의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였다. 위계적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는 이유는 분석자료가 위계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피해신고 결정이 범죄 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지역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일지역에 속한 범죄 피해자들 간에는 타 지역 출신과 비교하여 모든 변수들이 유사성을 가질 개연성이 있다. 소속지역을 하나의 클러스터(cluster)라고 한다면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정도는 클러스터 내 개인별 추정치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개별 지역이라는 클러스터별로 정도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회귀계수의 추정에서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고, 각 수준별 공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등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다. 위계적 로지스틱 모형은 피해자의 개인특성과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 자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개인은 개인끼리, 지역은 지역끼리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이들을 혼합하여 추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있어서 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지역변인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범죄와 지역의 위계

적 특성을 갖는 분석자료의 특성을 감안하고 동일 지역출신 피해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였다.

범죄 및 피해자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변수가 범죄피해 신고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고정효과를 제외한 모형(표 5의 모형1)의 예측된 고정효과와 지역사회의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표 5의 모형2)의 고정효과를 연구하였다. 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범죄유형, 범죄의 심각성, 성별, 나이, 가구구조,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 등을 사용하였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각 지역의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신고의식, 범죄발생율, 여성비율, 인구이동, 빈곤율, 이혼자비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지역사회의 범죄피해 신고효과

피해신고 결정요인 분석 시, 범죄 및 피해자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편과 종속변수만을 투입한 기본모형을 살펴보았다. 예측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은 로지스틱 다층모형의 위계적인 검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표 3>는 기초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기초모형1은 피해건수가 5 이상인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기초모형2는 피해건수가 10 이상인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기초모형3은 동질적 지역사회를 시군구 대신 16개 광역시도로 보다 넓게 구분할 경우 해당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할 로짓 추정치는 피해건수가 5 이상인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1.313, 피해건수가 10 이상인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1.198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임의효과를 살펴보면 다층모형에서 피해자의 신고가능성은 지역별 차이에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여부의 지역 평균 로짓의 지역수준 분산은 0.204, 표준오차는 0.118로 10%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기초모형1). 피해건수가 10 이상인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신고의사 로짓의 지역별 평균의 분산은 0.301, 표준오차는 0.169로 10% 수준 내에서 유의하였다(기초모형2). 즉, 각 시군구 간 범죄피해 신고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고결정 여부는 개별 사건과 지역수준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질적 지역사회를 광역시도로 구분할 경우에는 신고결정 여부의 지역 평균 로짓의 지역수준 분산은 0.0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모형3). 동질적 지역사회를 시군구 대신 광역 시도 단위로 분류할 경우에는 지역효과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동질적 지역사회로 파악하여 조사하는 것이 지역사회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변수를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였다.

〈표 3〉 범죄피해 신고여부에 대한 기초모형의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 결과

구분	기초모형1	기초모형2	기초모형3
상수항(고정효과)	-1,313*** (0,100)	-1,198*** (0,133)	-1,293*** (0,109)
지역수준 임의효과	0,204* (0,118)	0,301* (0,169)	0,068 (0,069)
피해건수	838	573	838
피해자 수	709	481	709
지역사회 수	81	40	16

주: 1) 괄호안은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2) 기초모형1은 피해건수가 5 이상인 8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 기초모형2는 피해건수가 10 이상인 4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 기초모형3은 지역사회를 16개 광역시도로 분류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것임.

2. 범죄피해 신고함수의 추정결과

여기에서는 위계적 로지스틱모형을 적용하여 범죄특성, 피해자특성, 지역사회 특성 등을 모두 포함한 신고결정 회귀식을 추정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표 4>의 추정이 위계적 로지스틱모형 적용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정한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설명변수의 계수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통상적인 신고결정함수와 마찬가지로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독립변수의 추정계수를 구하여 신고여부 중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을 식별하고자 한다.

<표 5>에서는 위계적 로지스틱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범죄피해 신고회귀식의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1과 모형2는 피해건수가 5 이상인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형1은 범죄신고 결정요인 분석시 지역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반면, 모형2는 지역효과를 통제하였다. 범죄피해 신고여부와 관련하여 지역수준의 분산은 모형1과 모형2에서 각각 0.316과 0.265로, 5%와 10% 수준 내에서 0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특정 지역사회는 타 지역사회보다 여전히 더 높은 신고율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서는 모형2의 추정결과에 대한 강건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모형3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정신적 고통 여부가 아닌 재산적 피해액의 로그값으로 정의하였다. 모형4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 변수를 모형2와 다르게 정의하였다. 모형2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는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인 반면, 모형4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 변수는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에 대한 응답이다. 모형5에서는 피해건수가 10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반면 모형2에서는 피해건수가 5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모형6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 변수를 모두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별 사건수준 예측변수의 신고효과를 살펴보면, 개인범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 지역효과와 여타 요인들을 통제한 모형2에서 가구범죄에 비해 사기 또는 절도와 같은 개인범죄인 경우 신고할 오즈(odds)는 0.49배로, 개인범

죄의 신고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 수준 내에서 유의하였다. 정신적 고통은 모든 모형에서 신고결정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범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진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신고할 오즈는 2.34배로, 정신적 고통을 가진 피해자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1% 수준 내에서 유의하였다. 재산적 피해액의 로그값도 신고결정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적 피해액의 로그값이 1단위 커질수록 신고할 오즈는 1.45배 더 커졌다(모형3).

피해자특성 변수의 신고효과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은 모형3을 제외한 5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 가구구조, 교육수준은 6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나이는 모형2와 모형4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효과를 통제한 모형2에서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피해자에 비해 저소득 피해자가 신고할 오즈는 1.46배로, 저소득 피해자의 신고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2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질수록 신고할 오즈는 1.01배 더 높았으며, 이는 10%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신뢰 변수의 신고효과를 살펴보면,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와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 변수의 추정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출동할 것이라는 진술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보통” 또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신고할 오즈는 각각 0.58배, 0.55배로, “보통” 또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신고가능성이 더 낮았으며, 이는 10%, 5%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위 진술에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신고가능성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1과 피해건수가 10 이상인 40개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모형5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모형4). 구체적으로, 범죄피해 신고시 경찰이 범인을 잡아줄 것이라는 진술에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자

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자에 비해 신고할 오즈가 각각 5.31배, 3.25배로, 신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는 각각 5%, 10%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진술에 “보통” 또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자의 신고가능성에 대한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경찰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변수가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생성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범죄 피해조사에서 응답자는 경찰의 출동태도와 검거능력에 대해 과거를 회상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제9차 범죄피해 설문조사 시점은 2011년 4월, 조사대상 범죄 발생 및 신고 시점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피조사자는 2010년 연말 기준으로 경찰의 출동태도 및 검거능력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구받았다. 조사 및 기준 시점으로 보아 일부 피조사자가 자신의 피해신고 경험을 토대로 경찰의 출동태도 및 검거능력을 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경찰의 출동태도 및 검거능력에 대한 피조사자의 평가에 이미 피조사자의 신고경험이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신고된 182건 중 범인이 일부 또는 모두 검거된 건수는 35건에 불과하다. 범죄피해 신고경험이 응답자의 경찰에 대한 평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적어도 자료상으로는 경찰의 출동태도 및 검거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와 피해신고 간에 부(-)의 관계가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의 출동태도 및 검거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피해자일수록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정확히 검증되기 어렵다. 즉, 범죄피해를 신고한 사람일수록 경찰의 출동태도 및 검거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범죄신고 제고효과는 과소 추정될 수 있다.⁴⁾ 경찰에 대한 신뢰 변수가 포함됨으로써 다른 변수가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형6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 변수를 모두 제외하였다. 모형6의 분석결과를 모형2와 비교하면, 추정계수의 크기는 약간 다르나 추정계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탁종연(2010)에서는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 변수가 절도와 사기사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피해신고 변수와 부(-)의 관계(즉,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피해자일수록 피해신고를 꺼린다)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 변수와 피해신고 변수간 내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표 4〉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과 인식

(단위: 건)

구분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						
		신고자					미신고자	계
		모두 검거	일부 검거	검거 실패	잘 모르겠다	소계		
검거 능력 인식	매우 부정적	4	0	17	4	25(13.7%)	40(6.1%)	65
	부정적	6	2	35	19	62(47.8%)	161(30.6%)	223
	보통	4	2	38	11	65(83.5%)	281(73.5%)	346
	긍정적	5	2	15	5	27(98.4%)	152(96.7%)	179
	매우 긍정적	0	0	1	2	3(100%)	22(100%)	25
계		29	6	106	41	182	656	838

주: 1)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은 2010년 연말 기준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잡아줄 것이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을 의미함.

2)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신고한 범죄피해의 범인이 검거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함.

한편 지역사회 생태학적 특성변수의 신고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유대와 신고의식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가 강한 지역사회의 피해자일수록, 즉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동네사람들이 서로 잘 돕는 지역사회 피해자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더 낮았다. 사회적 유대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해당 지역 피해자가 신고할 오즈는 0.17배 더 작았고, 이는 5%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의 피해자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신고의식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피해자가 신고할 오즈는 8.17배 더 커졌으며, 이는 5%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2에서는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율이 주민의 피해신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4~6에서는 범죄발생율이 높은 지역사회의 피해자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범죄발생율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피해자가 신고할 오즈는 각각 0.01배, 0.001배 더 작았고, 이는 10%, 5% 수준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비율, 인구이동, 이혼자 비율, 빈곤율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은 피해자의 신고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범죄피해 신고함수 추정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상수항		-1,336*** (0.451)	-0.627 (2.816)
개인범죄		-0,708*** (0.186)	-0,715*** (0.188)
정신적 고통		0,790*** (0.188)	0,849*** (0.191)
여성		-0,081 (0.184)	-0,078 (0.187)
나이		0,010 (0.006)	0,010* (0.006)
1인 가구		-0,471 (0.297)	-0,451 (0.302)
대졸이상		-0,014 (0.069)	-0,005 (0.070)
저소득		0,378* (0.210)	0,376* (0.213)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	매우 부정적	0,638 (0.546)	0,587 (0.552)
	부정적	-0,082 (0.356)	-0,060 (0.366)
	보통	-0,523* (0.317)	-0,550* (0.325)
	긍정적	-0,642** (0.304)	-0,597** (0.308)
지역 사회의 특성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		-0,706 (0.692)
	사회적 유대		-1,781** (0.708)
	신고의식		2,101** (0.870)
	범죄발생율		-4,198 (2.815)
	여성비율		0,019 (0.123)
	인구이동		0,074 (0.124)
	빈곤율		-0,040 (0.130)
	이혼자비율		-0,039 (0.108)
covariance estimate		0,316** (0.150)	0,265* (0.152)
지역사회 수		81	81
피해자 수		709	709
피해건수(신고건수)		838(182)	838(182)

주: 괄호안은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표 6〉 범죄피해 신고함수 추정결과 강건성 테스트

구분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상수항		-2,310 (3,483)	-3,705 (2,743)	-0,482 (3,872)	-2,577 (2,473)
개인범죄		-1,143*** (0,238)	-0,742*** (0,190)	-0,732*** (0,227)	-0,730*** (0,187)
정신적 고통 (모형3: 재산적 피해액의 로그값)		0,370*** (0,065)	0,818*** (0,191)	0,796*** (0,228)	0,847*** (0,188)
여성		-0,050 (0,239)	-0,126 (0,187)	-0,021 (0,227)	-0,075 (0,184)
나이		0,004 (0,009)	0,011* (0,006)	0,008 (0,008)	0,009 (0,006)
1인 가구		-0,149 (0,364)	-0,400 (0,302)	-0,337 (0,342)	-0,438 (0,298)
대졸이상		-0,068 (0,093)	0,017 (0,071)	0,025 (0,084)	-0,003 (0,069)
저소득		0,381 (0,266)	0,383* (0,212)	0,452* (0,257)	0,393* (0,209)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 (모형4: 검거능력)	매우 부정적	1,398* (0,745)	1,669** (0,716)	1,045 (0,638)	
	부정적	-0,120 (0,452)	1,178* (0,670)	-0,101 (0,432)	
	보통	-0,542 (0,404)	0,723 (0,666)	-0,888** (0,392)	
	긍정적	-0,635* (0,384)	0,413 (0,683)	-0,825** (0,373)	
지역 사회의 특성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신뢰 (모형4: 검거능력)	-0,986 (0,876)	-0,262 (0,426)	-0,565 (1,063)	
	사회적 유대	-2,400*** (0,838)	-1,645** (0,745)	-4,905*** (1,207)	-1,780** (0,694)
	신고의식	2,314** (1,022)	2,021** (0,824)	4,904*** (1,397)	1,900** (0,805)
	범죄발생율	-1,453 (3,488)	-4,588* (2,775)	-7,278** (3,582)	-4,786* (2,746)
	여성비율	0,051 (0,149)	-0,002 (0,123)	0,151 (0,166)	0,012 (0,121)
	인구이동	0,085 (0,182)	0,105 (0,120)	0,080 (0,142)	0,105 (0,117)
	빈곤율	0,081 (0,164)	-0,038 (0,129)	0,162 (0,171)	-0,044 (0,128)
	이혼자비율	-0,042 (0,741)	-0,045 (0,108)	0,065 (0,137)	-0,038 (0,107)
covariance estimate		0,269 (0,210)	0,257* (0,153)	0,216 (0,181)	0,266* (0,146)
지역사회 수		80	81	40	81
피해자 수		524	709	481	709
피해건수(신고건수)		611(126)	838(182)	573(135)	838(182)

주: 1) 괄호안은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2) 모형3에서는 범죄의 심각성 지표로 정신적 고통 여부를 대신해 재산적 피해액의 로그값을 사용함. 모형4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 변수는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에 대한 응답인 반면, 모형2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 변수는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임. 모형5에서는 피해건수가 10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반면 모형2에서는 피해건수가 5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모형6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 변수를 제외함.

3) 경찰에 대한 신뢰 더미의 준거변수는 “매우 긍정적”임.

V. 결론

본 연구는 범죄피해의 신고여부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구조적·생태학적 특성이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0년도 범죄피해조사 데이터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별 범죄피해 단위 통계자료와 81개 시군구 단위의 통계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는 범죄피해자의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은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주민간 유대가 강한 지역사회의 피해자일수록, 신고의식이 낮은 지역사회의 피해자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지역사회의 빈곤율, 가족붕괴율, 인구이동, 성비 등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은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시적인 신고요인을 살펴보면 가구범죄일수록,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저소득자일수록,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피해자일수록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유대 및 신고의식과 해당지역 범죄피해자의 신고여부 간 밀접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Goudriaan et al.(2005)은 네덜란드 자료를 이용하여 주민간 유대가 강한 지역사회의 피해자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저자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유대가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유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나,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그러한 메커니즘이 밝혀진다면 상술한 국가별 차이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변수가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불안정한 결과를 보였다. 경찰의 출동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피해자일수록 신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설문조사시점을 감안하면 범죄피해 신고경험이 응답자의 경찰에 대한 평가에 이미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어도 자료상으로는 경찰의 출동태도 및 검거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와 피해신고 간에 부(-)의 관계가 관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료상으로는 피해신고가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경래·김수동·최성락·이중환 (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II: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훈 (2012) 이민자지위와 범죄심각성이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3(1)
- 윤우석 (2010)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1(1)
- 이창훈(2011), 경찰상 암수범죄 추정방법 및 최소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 탁종연·노성훈(2009), 인종이 범죄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8
- 황지태(2009),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 Anderson, E. (1999) Code of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ew York: W. W. Norton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Goudriaan, H. (2006) Reporting Crime: Effects of Social Context on the Decision of Victims to Notify the Police, Veenendaal: Universal Press
- Azfar, O. and Gurgur. T. (2013) Police Corruption, Crime and Crime Reporting: A Simultaneous Equations Approach, NUPI Working Paper,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Baumer, E. P. (2002)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lice Notification by Victims of Violence, Criminology, Volume 40(3)
- Felson, R. B., Messner, S. F. & Hoskin, A. H. (1999)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Calling the Police in Assaults. Criminology, 37

- Felson, R. B., Messner, S. F., Hoskin, A. H. & Deane, G. (2002) Reasons for Reporting and Not Reporting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 *Criminology*, 40
- Gartner, R. and Macmillan, R. (1995) The Effect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on Reporting Crimes of Violence against Women,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7(3)
- Goudriaana, H., Lynchb, J. P., and Nieuwbeertaa, P. (2004) Reporting to the Police in Western N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 *Justice Quarterly*, 21(4)
- Goudriaan, H., and Nieuwbeerta, P. (2007) Contextual Determinants of Juvenil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s: A Vignette Experi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3
- Goudriaan, H., Wittebrrod, K., and Nieuwbeerta, P. (2005)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Reporting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46)
- Hickman, L. J., and Simpson, S. W. (2004) Fear Treatment of Preference Outcome? The Impact of Police Behavior on Victim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Incidents, *Law and Society Review* 37(3)
- Holmberg, U. (2004) Crime Victims' Experiences of Police Interview and Their Inclination to Provide or Omit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Management*, 6(3)
- Lizotte, A. J. (1985) The uniqueness of rape: Reporting Assaultive Violence to the Police, *Crime and Delinquency*, 31(2)
- Pino, N. W., & Meier, R. F. (1999) Gender Differences in Rape Reporting, *Sex Roles*, 40(11)
- Ruback, R. B., Greenberg, M. S., and Westcott, D. R. (1984) Social Influence and Crime-Victim Decision Making, *Journal of Social Issues* 40(1)
- Ruback, R. B. (1993) Comment on Bachman (1993):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Does Affect Victims' Decisions to Report Sexual Assaul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3)

- Skogan, W. G. (1984)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The Status of Worl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2)
- Xie, M., Panarsky, G., Lynch, J. P., and McDowall, D. (2006) Prior Police Contact and Subsequent Victim Reporting Results for the NCVS, *Justices Quarterly*, 23(4)

〈표 7〉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설명	출처
피해신고		범죄피해 신고여부 (예=1, 아니오=0)	범죄피해조사
범죄 특성	개인범죄	개인범죄인지 여부(개인범죄=1, 가구범죄=0)	범죄피해조사
	정신적 고통	범죄로 인해 우울함, 고립감, 두려움,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사람을 피해서 이사, 자살충동, 자살시살도 등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예=1, 아니오=0)	범죄피해조사
	재산적 피해액 로그	범죄로 인한 피해 물품이나 재산의 현금 가치에 로그를 취한 값	
피해자 특성	나이	피해자의 만 나이	범죄피해조사
	여성	피해자가 여성=1, 남성=0	범죄피해조사
	저소득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1, 200만원 이상=0	범죄피해조사
	대졸이상	피해자가 대졸이상의 학력소지=1, 아니면 0	범죄피해조사
	1인 가구	1인 가구=1, 2인 이상 가구=0	범죄피해조사
	경찰 신뢰도 더미	출동 태도 신뢰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범죄피해조사
		검거 능력 신뢰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지역 사회 특성	경찰신뢰도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범죄피해조사
	사회적 유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범죄피해조사
	신고의식	“우리 동네 사람들은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범죄피해조사
	범죄발생율	총 응답자수 대비 총 피해건수의 비율 평균값	범죄피해조사
	인구이동	2010년 전입자수의 비율 z-score	통계청
	여성비율	2010년 여성수수의 비율 z-score	통계청
	이혼자 비율	2010년 이혼자수의 비율 z-score	통계청
	빈곤율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수의 비율 z-score	통계청

Effects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Victims' Decisions to Notify the Police in Korea

Song, Yuna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neighborhoods' structural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n victims' decisions to notify the police. Few studies have examined victims' reporting behaviors at the meso or macro level in Korea. The present study combines individual-level data from the 9th Korean Crime Victim Survey with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s and performs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to test the effects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crime and victim characteristics simultaneous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ighborhoods' ec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cohesion and the perceived tendency to report crim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victims' reporting behaviors. The neighborhoods' struc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ercentage of public aid recipients, the percentage of divorced residents, mobility, sex ratio do not affect victims' reporting behaviors. The micro-level factors such as the type of crime, seriousness of crime, income, confidence in police effectivenes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victims' decisions to report.

❖ Keyword: police notification, crime victimization survey, social cohesion, socioeconomic disadvantage, confidence in police effectiveness

투고일: 11월 18일 / 심사(수정)일: 12월 17일 / 게재확정일: 12월 17일
--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ellow/ Ph.D. in Economics